안민정책포럼
www.thinknet.or.kr
AHNMIN INSTITUTE for Public Policy

본 세미나는 (사) 정보경영연구원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민정책포럼 2023년 상반기 세미나

규제개혁 비전과 전략

발표자 :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20대 의원))
사회자 : 지인엽 (안민정책포럼 경제제도분과 운영위원장)
일자 : 2023년 2월 24일 금요일

규제개혁의 비전과 전략

김 종 석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석좌교수
20대 국회의원
전 한국경제연구원장

"Regulation is like growing old. No one likes it. But think of the alternative."

(규제는 사람 늙어가는 것과 같다. 좋아 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생각해보라.)

-William Shepherd-

"Regulation is a hidden tax."

(규제는 감춰진 세금이다.)

-George Stigler-

행정개혁/규제완화

규제개혁

규제혁파

규제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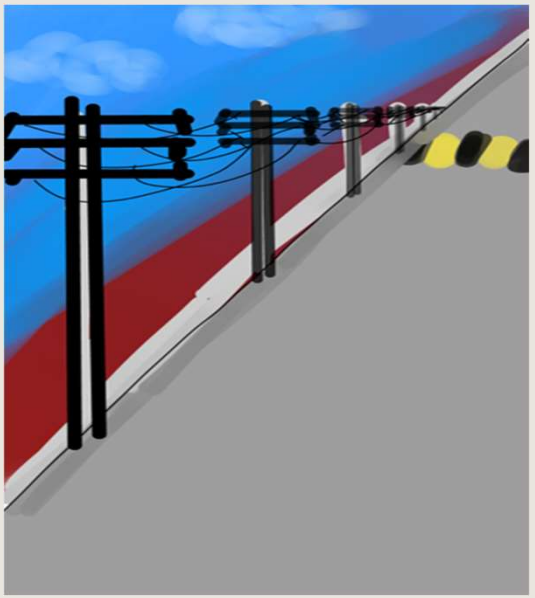

규제개혁의 정의(OECD)

- 정책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규제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과정. 즉, 규제의 성과, 유효성, 경제성, 준수율, 투명성 등을 향상시키는 규제수단의 개선과정을 의미.

- 이를 위해 비규제적 정책수단의 도입, 규제 준수 비용의 완화, 규제의 투명성 제고, 불필요한 규제와 절차의 폐지 또는 간소화(deregulation)를 포함하는 일련의 개혁을 규제개혁이라고 정의.

규제비용
(ECONOMIC COST OF REGULATION)

준수비용

기준과 절차를 지키기 위해 소모하는 돈, 시간, 노력

기회비용

규제로 인해 발생하지 못한 신기술과 신산업
그로인해 상실된 소득과 고용창출 기회

규제개혁의 기대효과

경제활성화와 물가안정

부정부패의 해소

국민생활의 질 향상

민간자율과 창의 확대

경제 개방과 국제화

규제개혁 =

규제품질의 향상 과정

- 일과성 개혁이 아니라, 정부의 상설기능이 되어야
- 저수지 수질관리와 같은 프로세스
- Stock 과 Flow 의 관리

Regulatory Quality

불량규제
(LOW QUALITY REGULATIONS)

한국 규제문제는 양보다 질의 문제

한국은 규제가 과다하다고 국내외 기업인들이 느끼는 것은 규제의 총량 때문이 아니라, 규제의 내용과 집행상의 문제에 기인.

보이지 않는 '규제의 손'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와 행정간섭

민간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관청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

민간은 항상 지도와 계몽의 대상

절차와 기준이 불투명

집행권자의 재량권이 많다.

이와 비례하여 부정과 권한 남용의 가능성 증가

"한국의 정부규제에서는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다!"

불량규제
(LOW QUALITY REGULATIONS)

비현실적인 규제

도입 과정에 지나친 이상론 지배

낮은 준수율로 인해 사실상 무규제 상태 초래

비리와 권한남용의 배경

"한국은 준법투쟁이 가능한 나라!"

사전규제 원칙금지

국민 대다수를 잠재적인 범법자로 전제하고 만들어진 규제

신기술 신산업의 출현에 장애

창의와 정직이 인정 받지 못하는 획일적 규제문화

중복규제

하나의 행위에 대해 다수의 규제기관이 존재

질긴 규제 한 개가 발목을 잡는다.

"규제의 곱셈법칙"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공무원의 직업의식 부족이나 자질문제에 기인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님.
불량 고비용 졸속규제의 생산 뒤에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 배경이 있음.

구조적 배경

예산과 인력의 제약을 우회하려는 유인

규제의 사회적 비용의 외부화

공무원 조직의 “과도한 업무의욕 "

→ 불량 고비용 규제

냄비여론, 국민정서, 정치논리

→ 졸속 규제

❑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품질관리 기능이 필요

❑ 예산, 법제, 인사, 조직에 관하여 범 정부적인 횡적 통제기능이 존재하는 것과 같이

❑ 규제수단의 선택과 규제성과의 검증에 있어서 제3자적 시각을 가진 독립된 규제 품질관리 전담기구가 필요 (World Bank, OECD 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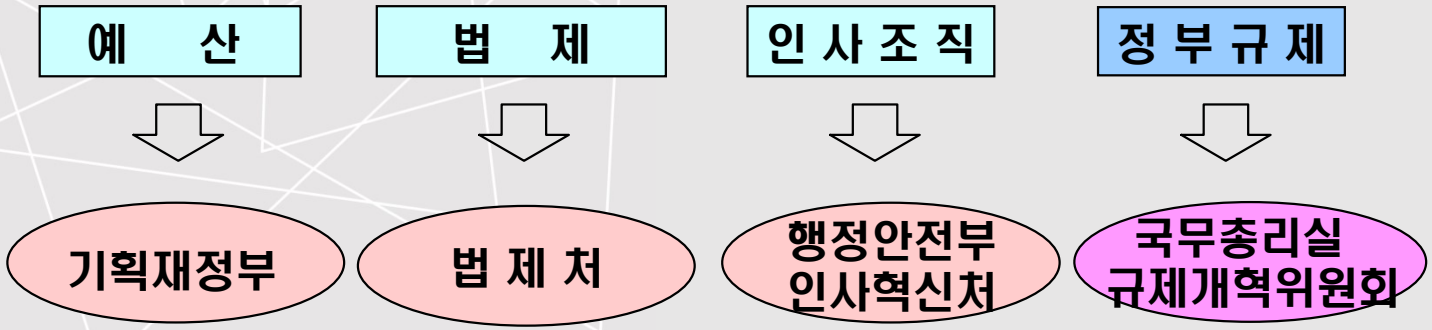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시스템

원칙
1. 全정부, 경제단체, 연구기관, 퇴직공무원 등 국가 역량을 총결집하여 덩어리규제 집중 개선
2. 기존 규제혁신 제도 지속 운영 + 필요한 범위내 제도 최소 보완 → 1년 후 성과 재검토·제도개편
3. 각 부처 책임하의 자율적인 규제혁신 중점 추진 + 성과창출 위한 행정문화 조성

추진 체계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전략회의 (신설)
-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사무국 : 국무조정실)
- 대통령(의장), 총리(부의장),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 경제단체, 전문가 등 민관 참여
  – 총리가 회의 주재 하되, 필요한 경우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추진단 단장 : 총리 (신설)
- 퇴직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 민관 합동 (200명)으로, 국무총리 소속 추진단 설치(2개 본과 · 10개 팀 구성)

- 연구기관 규제전담조직
- 경제협단체 규제전담조직
- 각부처 규제전담조직

정부 부처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판부 (신설)
- 민간전문가, 현장활동가로 규제심판관 구성(1000여명) → 건의 건별로 규제심판부 구성 (Pool제)

추진 전략

덩어리규제의 전략적 개선

퇴직공무원·기업·전문가 역량 결집, 덩어리규제*집중·발굴 개선

* 기업활동에 큰 파급효과가 있는 복합 규제 (예: 수도권, 노동, 환경 규제)

- **과제 발굴**
  - 경제단체, 연구기관 부처 등의 규제전담조직 연계, 덩어리 과제 발굴
  - 가능한 한 자체 개혁
  - 기타의 경우 적정한 기관에 이송
- **개선안 마련**
  - 규제혁신추진단에 이송된 덩어리 규제를 전담팀을 운영하여 규제비용, 국제기준 등 종합 검토 → 개선안 마련
- **개선안 확정**
  - 규제혁신추진단에서 해결되는 경우 종결
  - 해결되지 않는 경우,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덩어리 규제 개선방안 논의, 최종확정
- **집행 및 점검**
  - 소관부처 책임하 후속조치 이행, 규제혁신추진단은 현장 점검 · 보완

규제심판제도

기업·국민의 현장 규제애로를 균형적 시각에서 심판(4단계)

- **건의 접수**
  - 온라인·오프라인 창구 통해 건의
  - 폭넓은의견수렴 필요시 '경청기간' 설정, 토론 진행
- **소관부처 검토**
  - 건의 수용시 규제개선안 마련·추진
- **규제심판부 판결**
  - 소관부처 불수용 과제에 대해 규제심판부가 이해관계자·부처 의견수렴* 통해 검토 → 권고안 제시
  - *소관부처가 해당 규제 필요성 타당성을 증명
- **규제개혁 위원회 개선권고**
  - 소관부처가 규제심판부 권고안 불수용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권고안 의결
  - 부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따라야 함
- **규제혁신 전원회의** (필요시 개최)
  - 소관부처가 규제개혁위 권고 불수용시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검토, 최종 확정
- **집행 점검**
  - 소관부처 이행, 국조실은 신속입법 지원
  - 민관합동으로 이행여부·개선효과 점검

과감한 신산업 규제혁신

규제샌드박스 플러스*
- 이해갈등으로 진전이 없는 규제는 중립적인 민간전문가 참여하에 해결방안 강구
  1. 유사신청기업 참여
  2. 정책실험 실시
  3. 규제개선 필요시 이해관계자 협의
  4. 법령 개정
- 심의기한(90일) 설정, 법률 개정 계획 수립 통보 의무화 (심층종료 후 60일 이내) 등 신속한 규제개선
- 유사분야 규제자유특구 간(예: 수소산업 등) 협의체 구성, 공동 기술개발 및 데이터 공유로 시너지 효과 창출

네거티브 규제 확대(행정규제기본법)
- 기업수요 등을 바탕으로 미래산업 등 핵심분야 선정, 관련법령 전체 정비
- 파급효과가 큰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우선 적용

규제 품질관리 강화

규제개혁위원회 재설계
- 위원 전문성·다양성 제고
- 민간전문가(규제심사관) 충원을 통한 심사 역량 강화
- 규제연구센터(KDI, 행정연) 역할 및 역량 강화

중요규제 심사 강화
- 위원회 심층 심사 대상인 중요 규제 범위를 확대
  *규제비용 연간 100억원 이하라도 경제·사회 파급효과 큰 경우 등

규제비용 획기적 감축
- One-In, Two-Out (200%) 추진
- 부처별 규제비용 감축목표 설정

재검토기한 의무설정
- 신설·강화되는 경제활동 및 일자리 관련 모든 규제에 재검토기한 설정(3년)
- 재검토기한 도래시 규제영향분석 통해 규제 폐지·개선

"관리시스템 혁신"

규제행정 디지털 전환
- 법률 조문 디지털화, AI 적용 등을 통한 규제영향분석 고도화
- 디지털규제 내비게이터 구축, 복잡·다양한 규제를 쉽게 제공

규제행정 문화·행태 개선
- 인사체계 전반 개선,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문화 조성
- 현장중심·유연한 행정문화 확산

현 정부 규제혁신 추진 시스템

- 민간 눈높이, 피규제자 관점

규제의 필요성과 수단의 적절성에 대해 규제권자가 입증해야
이를 위해 규제심판부 설치

- 규제심판 3심제

각 부처 자체 규제혁신팀에서 1차로 심사
미합의 과제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 재심
규제심판부 권고에 불복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규제혁신 3원 체제

규제혁신 전략회의(의장 대통령)
규제혁신 추진단(단장 국무총리)
규제개혁 위원회(민관 공동위원장)

규제신문고 처리 절차

국민·기업·지자체 건의
• 규제개혁 신문고 홈페이지
규제애로 사항에 대하여 기존 규제의 합리성·적절성을 검토하여 개선 또는 폐지할 것을 요청
- (접수방법) 홈페이지 신청 또는 우편, 팩스 등 발송·발신
1단계
부처 답변
• 소관부처 답변 (14일 이내)
소관부처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의 내용의 수용여부를 검토하여 답변
- (통보방식) 등록된 휴대전화로 답변완료가 안내(SMS)되며, 홈페이지에서 내용확인 가능
- 일부 건은 소관부처가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기간을 1회 연장 가능
2단계
소명 요청
• 소관부처 재검토·답변 (3개월 이내)
합리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수용되지 않은 건의가 있는 경우에 규제개혁위원회는 소관부처에 소명요청을 하면, 소관부처는 3개월 내에 규제존치 필요 등을 재검토하여 답변
3단계
개선 권고
•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
규제존치로 소명하였으나 개선이 필요한 건의는 규제개혁위원회 종합검토·심의, 필요시 규제 개선권고

"덩어리 규제": 복합규제(예시)

중소기업보호
생활안전
산업안전
부동산 가격안정
금융건전성
지역균형발전(수도권 규제)
고용보호
환경보호
소비자보호
경제력집중 억제
교육 문화
농어업 육성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논리 지배
여러 부처, 금융 조세 수단이 연계
이해관계 복잡

정책목표와 규제개혁은 상충관계가 아니다.

대부분 “Right Goal, Wrong Methods”

정당한 정책목표라도 규제 수단은 규제영향분석(RIA), 비용편익분석(CBA) 등의 과학적 분석과 객관적 증거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함.

규제행정의 목표

단속실적?

단속실적이 목표인규제행정에서는 규제기관과 국민의 관계가 '고양이와 쥐 '

준수율?

준수율이 목표인 규제행정에서는 규제기관이 '규제도우미'

→ **규제행정도 서비스!!**

감사합니다.